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364,195,748	70,925,872
일반회계	1,982,834,525	59,485,036
특별회계	381,361,223	11,440,837
공기업특별회계	295,721,795	8,871,65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0,788,456	4,223,65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4,933,339	4,648,000
기타특별회계	85,639,428	2,569,183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9,413,690	282,411
수질개선특별회계	9,819,278	294,578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0,702	321
지하수특별회계	823,640	24,709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6,428,000	1,392,84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8,412,540	552,376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731,578	21,94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 "해당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해당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804,42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5,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